

우대사항에 대한 기준(선행기술조사/특허분류)

관련법률에 의한 가산점수(각 전형별 가산)

구 분	대상자	가산점수	비고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5~10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기준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10점

* 중복시 최고 가산점수 1개만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률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의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하지 않음

영어

TOEIC	810점 이상	700점 이상	700점 미만
TEPS	647점 이상	555점 이상	555점 미만
TOEFL	92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배점	15점	10점	6점

* 영어권 학사이상 해외학위 소지자의 경우 15점 부여

** 중복시 최고 배점 1개만 인정

*** 성적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4점 부여

중국어 및 일본어

중국어		HSK 5급 이상	HSK 4급 이상	HSK 4급 미만
일본어	JLPT	N1	N2	N3
	JPT	660점 이상	525점 이상	525점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 일본어 또는 중국어권 해외학위 소지자의 경우 10점 부여

** 중복시 최고 배점 1개만 인정

*** 성적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4점 부여

학위

구분	석사 이상	학사
배점	10점	8점

* 석사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사와 동일 배점 부여

변리사 자격 여부

구분	변리사 자격
배점	5점

* 변리사 자격이 없는 경우 배점 없음

경력

선행기술조사/특허분류 관련 경력

구분	3년 이상	1년 이상
배점	10점	8점

* 1년 미만인 경우 기본점수 6점 부여